



< 수시 공시 >

2011.10.17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4 호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현재,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펀드명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A형	2,617,513,817	2,415,222,364	922.72
2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C1형	5,162,937,456	4,730,349,051	916.21
3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 2 호[주식혼합]A형	1,165,139,289	1,068,876,192	917.38
4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 2 호[주식혼합]C1형	1,225,715,470	1,117,331,508	911.57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년)

3. 발생 일자 : 2011.10.14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